

2021년도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
일반감사 보고서

2021. 3.

감사 보고서

본 감사는 재단법인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020년도 운영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□ 감사 개요

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는 2020년도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고, 아울러 예산의 편성·집행 등 회계관리 및 사업집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.

□ 감사 총평

가. 회계 결산 분야

- 진흥원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예적금 및 예치금의 잔액 조회 절차 등 제반 감사결과 진흥원의 자산,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또한, 2020년도 진흥원 총 수익은 10,159,543천원, 총 비용은 10,495,795천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36,252천원이 발생한 바, 진흥원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,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번호	내 용	비 고
1.	결산보고서 재정운영성과 연도별 경영실적의 대행사업수익과 기타수익이 재무제표상 운영성과표의 수익 수치와 상이함.	수정필요

나. 일반 운영 분야

재단법인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2018년 3월 설립된 이래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콘텐츠 분야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힘써 왔습니다.

금번, 일반감사를 통해 진흥원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한 결과,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업무 추진상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다소 발견되었습니다.

따라서,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감사 결과

가. 일반운영 분야: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: 8건

① 예비비 지출 절차 및 세출예산 집행과목 미준수

- 「재무회계규정」 제19조(예비비 사용)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이유, 사용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, 일상적·반복적으로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건임에도 2020. 12. 26.에 예비비로 진흥원 본원 인테리어 가구 구매를 위해 14,308,000원 지출하였음.
- 2020. 3. 13.에 ‘직원치료비 지출’ 내용으로 628,200원 지출된 건은 산재보험 처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 절차에 따라 지출하지 않고,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지출되었음.
- 임차료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건(2020.2.4. 정수기 임차료 149,600원 지출, 2020. 5.18. 본원 물품 보관 창고 임차료 2건 5,200,000원)이 있음.

② 용역 계약 관련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‘산출내역서’ 작성 미흡

- 2019.5.29. 계약체결하고, 2020.2.21. 지출한 ‘제주영상문화산업 및 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’ 용역의 산출 내역 작성시에 산출내역 산출 방식에 인건비 부분을 사람 수에 근거하여 산출하지 않고 ‘1식’ 이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.
- 2020. 7. 7.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/문화기술개발지원부분 선정기업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 의뢰시에 예정가격 산출 내역 중에 인건비 산출식에서 「기획재정부예정가격작성기준」 제26조(인건비)에서 정한 별표5의 기준 단가표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출하였음.

③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한 관련 규칙 제정 필요

- 「수익사업 관리 규정」 제6조(수익사업의 운영)의 규정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원장이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수익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④ 신규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추가 필요

- 「직제 및 정원 규정」 제7조(업무분장)에 신규 위탁 사무인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(2020. 3. 1. 위수탁계약 체결) 및 제주실내 스튜디오 운영(2021. 3. 12. 위수탁 계약 체결)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토록 개정이 필요함.

⑤ 신규 장비 구입 품목에 대한 사용료 등 규칙에 미반영

- 신규물품 구입 시 물품검수조서 작성 및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고 「물품 자산 관리대장」에 구입 물품을 등재하여야 하며, 「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」에 물품 대여료 및 감면 규정 등을 개정, 등록하여야 함.
- 「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」 별표2의 ‘장비사용료’ 규정이 2019. 4. 30. 개정된 이후에 매입한 장비에 대해 사용료가 추

가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.

⑥ 사업 효과 분석 및 성과물 활용 방안 마련 필요

- 사업에 따른 각종 성과물이 도민 대상 성과 공유 기회 마련 등 계속 홍보·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함.

⑦ 물품 장비 대여 업무 전산시스템 미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

- 현재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었으나, 대여 절차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대여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음.
- 업무 처리 과정이 개별 컴퓨터를 이용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자료 보관의 안정성이 취약하며,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.
- 관련 프로그램 전산화 및 물품 대장 자료를 구축하여 대여 신청과 납부 방법의 편리를 제공하고, 대여료 세입 및 감면 신청 처리 절차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.

⑧ 지출 회계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 필요

-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회계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출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 유지 보수료를 산정하여 기능 개선이 필요함.

나. 회계 결산 분야: 지적사항 없음

2021년 3월 22일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운영 감사 강 태 군



회계 감사 신 창 환 (인)